

1. 제정이유

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와 신청에 필요한 서식,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범위,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, 긴급한 사유의 작업 일시정지 명령 등 「항만안전특별법」(법률 제18369호, 2021.8.3. 공포, 2022.8.4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(안 제2조, 별지 제1호서식)

1)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, 변경승인,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·변경승인·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함.

2) 승인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·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.

나.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범위 규정(안 제3조)

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항만의 보안 및 경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

- 직원, 항만운송참여자 소속 직원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로 규정함.
- 다. 항만안전점검관 등의 권한표시 증표 서식 규정(안 제4조,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)
- 권한표시 증표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으로 규정함.
- 라.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해 명확히 규정(안 제5조)
- 관리청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, 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작업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6조)
- 1)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명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
 - 2) 항만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
 - 3) 자연재난 및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2. 4. 6. ~ 5. 16.) 예정
 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항만안전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) ① 「항만안전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자체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의 승인, 변경승인,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·변경승인·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.

1. 최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: 최초 하역작업 시작 전
2.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: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
3.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: 「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

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·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조(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등)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만의 보안 및 경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직원
2. 항만운송참여자 소속 직원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

제4조(항만안전점검관 등의 권한표시 증표)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제5조(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)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, 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의 이행결과 등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“개인정보”를 제외한 전부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.

제6조(긴급한 사유의 작업 일시정지 명령)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명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
2. 항만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
3. 자연재난 및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·변경승인·갱신 신청서

[]승인 []변경승인 []갱신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전화번호	
	성명(대표자)		
	주소		
사업소	소재지		
	사업구역(항만명)		
	변경사항 적용일		

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☐승인 · ☐변경승인 · ☐갱신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자체안전관리계획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회신문	→	통 지
신청인		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		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		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		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항만안전점검관증

(앞쪽)

제 호
항만안전점검관증
사 진 3cm×4cm (모자 벗은 상반 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성 명 기 관 명

60mm×90mm[보존용지 120g/㎡]
(색상: 연노랑색)

(뒤쪽)

항만안전점검관증
소속/직급:
성 명:
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 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 2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으로 임명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기관장명 의 직인
1. 이 사람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·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항만안전점검요원증

(앞쪽)

제 호

항만안전점검요원증

사 진

3cm×4cm

(모자 벗은 상반
신으로 뒤 그림
없이 6개월 이내
촬영한 것)

성 명
기 관 명

60mm×90mm[보존용지 120g/㎡]
(색상: 연노랑색)

(뒤쪽)

항만안전점검요원증

소속/직급:

성 명:

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항만안전특별법」 제
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
2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
임명(지정, 위촉)된 사람임을 증명
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장명 의 직인

1. 이 사람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·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
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